

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회 부 일 자 : '96. 9. 6 화 순 군 수

나. 상 정 일 자 : '96. 9. 18 (제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. 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도시과장 문 두 식

나. 제 안 이 유

- 금회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제정과 함께 택지조성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실시키 위하여 화순군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키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공기업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1항 제13호의 토지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조례 제정안은 화순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자금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키 위하며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이나 조례제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9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회계관리와 합리적 운용을 위함.

2. 개정근거

지방공기업법 제13조

3. 주요내용

○ 목적(조례안 제1조)

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세입(조례안 제2조)

세입은 선수금, 지방채, 전입금, 부담금, 보조금, 토지분양대금, 환지청산금, 부지임대료 및 기타 수입

○ 세출(조례안 제3조)

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, 전출금, 기타 경비

○ 회계간 전용(조례안 제4조)

- .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
- .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회계 전용

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세입)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, 지방채, 전입금, 부담금, 보조금, 토지분양대금, 환지청산금,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3조 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, 전출금, 기타 경비로 한다.

제4조 (회계간 전용) ①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합의 발생으로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,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.

② 이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있다.

제5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